

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5월 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5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5월13일) 상정
- 제10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5월14일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여성복지과장 김정숙)

□ 제안이유

- 가정폭력사태가 급증하고 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여성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, 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- 보호시설의 운영관리, 위탁계약, 수탁자의 의무 등을 정함
(안 제4조내지 제6조)
- 보호시설의 지도감독, 위탁의 취소,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8조내지 제10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번호	제124호
의결연월일	2003.5.15 (제104회)

제출년월일 : 2003년 5월 2일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 안 이 유

- 가정폭력사태가 급증하고 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여성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, 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는 것임

□ 주 요 골 자

-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3조)
- 보호시설의 운영관리, 위탁계약, 수탁자의 의무 등을 정함 (안 제4조내지 제6조)
- 보호시설의 지도감독, 위탁의 취소,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8조내지 제10조)

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(이하 “보호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보호시설의 명칭은 부천시여성의쉼터라 한다.

②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.

제3조(업무) ①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
2.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
3.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4. 경찰관서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
5.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
6.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·연구
7. 피해자를 일시보호 하는 일
8. 피해자의 신체적·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
9.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
10.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

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호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한다.

제4조(운영관리) ①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. 다만,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연장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.

제5조(위탁계약) 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보호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경비)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지도감독)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
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았을 때
3. 기타 시의 시책과 보호시설의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제10조(손해배상) ①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.

②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